

사단법인 전남 박물관·미술관 협회 정관

제정 2016 . 10 . 6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남 박물관·미술관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다공길 25 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건전한 박물관, 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전라남도 내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발전을 위한 협력망사업
2. 전남 도내 박물관·미술관 정보교류 및 홍보사업
3. 전남 도내 권역별 전시기획사업
4. 전남 도내 박물관·미술관 임직원 포상사업
5. 전남 도내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전라남도 내에 주재하는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관의 대표자 1인
2. 준회원 : 전라남도에 주재하는 미등록 관의 대표자 1인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 납임금과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와 회원이 소속된 박물관, 미술관에 근무하며 해당 관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 7조의 제3호를 해태할 경우 제6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3년간 연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회원으로서 존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선출직)
2. 부 회 장 1인 (선출직)
3. 이 사 5인 이상 (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선출직)
4. 감 사 2인 이하 (선출직)

제11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소속 박물관·미술관으로부터 면직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1항의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가 있을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고,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팩스, 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출석 및 의결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위임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등기우편, 문서(팩스, 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지원금 및 보조금
3. 후원금 및 출연금
4. 지정기부금
5. 기타 수입금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정관변경) 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으로 성원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원의 출석 및 의결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